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김태수 의원
나. 의안번호: 제1527호
다. 발의일자: 2024. 2. 1.
라. 회부일자: 2024. 2. 7.

2. 제 안 사 유

- 최근 서울시 관내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자체 측정한 결과 일부 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환경부 권고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실내 라돈 농도를 줄이기 위하여 서울시 관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설치 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을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관내 다중이용시설 설치 또는 공동주택 건축 시 라돈의 실내 유입과 건축자재로부터의 방출을 줄이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320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1019)에 대한 심사 결과¹⁾를 일부 수용하여 동 조례에 라돈 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음.
- 안 제8조의2제1항은 시장이 라돈으로 인해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실내 유입을 줄이거나 건축자재로부터 방출을 차폐하기 위한 공법 사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의10을 근거로 하고 있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10(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략)

1) 심사보류 사유: 별도 조례 제정보다는 현행 실내공기질 조례에 일부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고 조례 내용에 세부 공법 적용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형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법 제11조의10은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려는 조치이며, 이에 필요한 공법 사용을 권고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 제시한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라돈을 차폐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법 제11조²⁾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 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접착제, 페인트 등)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염물질 대상에 라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라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최근 다수 언론보도³⁾에서 신축아파트 내 라돈 문제를 비중 있게 제기 하고 있고 그 원인으로 시멘트 등의 건축자재로부터 방출을 지목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년)에서도 라돈 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 선별·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보다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정비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안 제8조의2제2항은 시장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시행규칙 제10조의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음.

2)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접착제, 2. 페인트, 3. 실란트(sealant), 4. 퍼티(putty), 5. 벽지, 6. 바닥재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⑦ (생략)

3) ① 우리 아파트 안전할까? 시멘트에 물부으니 충격적 결과가(오마이뉴스, 24.1.24.)

② [토크와이드] ‘라돈’ 잇따라 검출되는 새 아파트... 기준 강화하면 해결될까?(대구MBC, 24.2.6.)